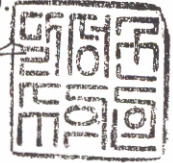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
----------	------

제출일자 : 2014.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3.7.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규정(제5조)
- 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보완(제7조)
- 다.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조항 신설(제12조)
- 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신설(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77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5. 8. ~ 5.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제10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고”라 함은”을 ““금고”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회계”라 함은 군”을 ““일반회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회계”라 함은”을 ““특별회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이라 함은”을 ““기금”이란”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금고약정”이라 함은”을 ““금고약정”이란”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군과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

로, “10일”을 “20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군과 금고간 협력사업비)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된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은 금고약정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군홈페이지 또는 군의 관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군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업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된 경우 만점처리 가능	32 10 2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18 6 4 5 2 1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군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21 6 8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0 5 7 7 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9 5 4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6조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다. 제나호에 불구하고 항목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3가(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항목 5가(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경우 평가 등급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 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10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군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공금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 관내지점의 수 및 군민 이용 편리성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 망 및 관내 영업점(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특히, 관내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세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체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1) 지역사회 기여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군과의 협력사업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과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02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 규정함으로써 대구 광역시 달성군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금고”라 함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고”란----- ----- ----- ----- ----- -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2. “일반회계”라 함은 군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세입·세출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2. “일반회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
3. “특별회계”라 함은 군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에 의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 ----- ----- -----.
4. “기금”이라 함은 군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	4. “기금”이란----- ----- 「지방자치법」 제142

<u>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u> 5. (생략) 6. “<u>금고약정</u>”이라 함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u>지방공기업법의 규정</u>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의 지정) ①<u>금고의 지정방법에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평가하여 금고로 지정(이하 “경쟁방법”이라고 한다)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이하 “<u>수의방법</u>”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u>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u>	<u>조</u> ----- <u>법률에 따라</u>----- - -----. 5. (현행과 같음) 6. “<u>금고약정</u>”이란----- ----- ----- -----. 제3조(적용범위) ----- ----- -----, ---- <u>지방공기업법</u>----- -----. 제5조(금고의 지정) ① <u>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다만, <u>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u>
--	--

<u>금고로 지정하는 경우</u> 2. <u>법을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신규로 설치할 특별회계의 금고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군 금고 중에서 지정하는 경우.</u> 다만, 이 경우 그 금고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u>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u>대구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군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② <u>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제6조(평가기준) ① <u>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u>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② ----- 4년 -----. 제6조(평가기준) ① <u>제5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	---

<u>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u> 1. ~ 4. (생략) 5. <u>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로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배점은 10/10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u> 2. (생략) 3. <u>기타 금고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u> <신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u>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u> 1. ~ 4. (현행과 같음) 5. ----- <u>군과의 협력사업</u>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심의·평가</u> ---. 1. <u>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u> 2. (현행과 같음) 3. <u>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③ ----- -----, ----- ----- <u>각호의 어느 하나</u>----- -----단,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평가
--	---

“로 한다.”

1.·2. (생략)

④ ~ ⑥ (생략)

⑦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 심의·평가 및 금고의 지정·공포)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 및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보 등에 공고 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 및 해지)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금고운영 보고)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을 제출하여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범위-----

-----.

제9조(제안서 심의·평가 및 금고의 지정·공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제10조(금고약정 및 해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 20일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운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야 한다. <신 설> <신 설>	-----.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군과 금고간 협력사업비)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된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은 금고약정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군홈페이지 또는 군의 관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 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안전행정부예규 제77호
(2014. 3. 7. 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①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②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③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 : 1금고 지정(단일금고)
- 특별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A(특별·기금회계)- 갑은행, B(특별·기금회계)- 을은행, C(특별·기금회계)-병은행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⑤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①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②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9)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9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9)	6. 기타사항(9) - 항목 가. 000(5) 나. 000(4)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신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신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BIS 자기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신협, 조합) 세밀등급과 응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세밀등급)과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차기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 BIS자기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1)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신협, 조합) 세밀등급과 응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세밀등급)과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차기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③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집행내역 공개)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 정책사업(금고협력사업)으로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내역 공개

—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①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②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①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 당시 금고지정을 위해 공고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 3. 25)은 폐지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9	
	가. <u>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u>	(5)	
	나. <u>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u>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9	